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알림

1.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110호, 국토교통부령-395호)」 개정 관련입니다.

2.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경사로 설치기준이 아래와 같이 개정(2017. 2. 16.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전거 경사로 설치 시 규칙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에서도 점자블록 설치, 자전거 경사로 끝부분 마감처리 등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지하철 계단 등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경사로 설치간격을 가능한 최소화하여 자전거를 기대워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 경사로 설치 기준 주요 개정사항 》

- 자전거 경사로 설치 최소 간격 축소 (0.35m → 0.2m)
- 경사로 설치간격이 0.2m인 경우 자전거를 약 9도 기울이면 벽면과 자전거 핸들이 닿지 않도록 조치
- 점자블록 설치 및 경사로 돌출부 마감 등 안전기준 신설
-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 경사로 외에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된 경우 자전거 경사로 설치 예외 규정 신설
- 부산·대구·대전 지하철은 자전거 이용자의 엘리베이터(E/L) 사용을 허용중임

붙임 :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행정자치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자전거정책과장), 부산광역시(교통운영과장), 대구광역시(버스운영과장), 인천광역시(도로과장), 광주광역시(도로과장), 대전광역시(건설도로과장), 울산광역시(교통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도로과장), 경기도지사(도로관리과장), 강원도지사(지역도시과장), 충청북도지사(도로과장), 충청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전라북도지사(교통물류도로과장), 전라남도지사(지역계획과장), 경상북도지사(도시계획과장), 경상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시건설과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서울메트로사장,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부산교통공사사장, 인천교통공사 사장,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주무관 **시창원** 행정사무관 **남부현** 생활공간정책과 전결02/16
장 **천영평**

협조자

시행 생활공간정책과-631(2017.02.16.) 접수 건축처-962(2017.02.16.)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1316호 /

전화 02-2100-4267 전송 02-2100-4239 / scwksy@moi.go.kr / 공개